

■ 당첨자 필수 서류

서류	유의사항
신분증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
주민등록표등본	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세대 구성 사유(일자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
주민등록표초본	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을 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
가족관계증명서	성명(세대원)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를 포함하여 발급
인감증명서 (본인서명사실확인서)	본인발급분만 해당(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)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본인 접수시에만 해당
인감도장	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본인 서명으로 대체
출입국사실증명원	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
■ 노부모 특별공급 추가 서류 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
서류	발급기준	유의사항
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공급신청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(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“뒷자리” 포함)
주민등록초본	직계존속(부.모)	만 65세 이상 부.모를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-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(3년이상 표기 필수)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
	직계비속(자녀)	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-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(1년이상 표기 필수)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
가족관계증명서	배우자	-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피부양자로 산정한 경우 - 재혼가정 자녀일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
	직계존속(부.모)	-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부양하는 부.모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- 부양하는 부.모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
혼인관계증명서	- 본인 - 직계비속(자녀)	- 만 30세 이전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- 만 18세 이상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미혼자녀임을 확인)
출입국사실증명원	- 직계존속(부.모) - 직계비속(자녀)	기록대조일을 직계존·비속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 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“상세”로 발급
복무확인서	본인	10년이상 장기 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

■ 대리인 서류제출 및 계약시 추가 서류

서류	유의사항
인감증명서	계약자의 인감증명서(본인발급)/사용처 : 위임용으로 사용
인감도장	계약자의 인감도장
대리인 신분증	대리인 확인